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7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 안 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 추진의 일원화로 자치 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시군정원, 직렬, 기능조정권한 삭제
- 수산자원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근 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 따로 붙임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 ----- 따로 붙임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 따로 붙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 ----- 따로 붙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지방과 소관사무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14호는 제10호로 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축산과 소관사무 제55호 다음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축산과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나. 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 다. 오염원 조사 및 조치 라. 오염사고 발생시 환경오염도 조사 마. 수산자원보전사업 실시 바. 표지판 설치 사. 관리부 마차 및 보고 아. 현지 지도 감독 	국토이용관리법 동법제14조의2, 제26조 동법제15조제1항 제5호, 제17조 수자원보전지구관리 요령제6조 동관리요령제7조 제3항 동관리요령제8조 동관리요령제9조 동관리요령제10조 동관리요령제12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 제8호 다음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도시개발과	9	○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10	○ 부단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인가	동법제76조의2제2항
	11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법제9, 10, 11조
	12	○ 재개발사업시행의 지도감독	도시개발법제6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